

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

1. 사업개요

- **(목적)** 구인·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·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구인·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
- **(내용)** 매년 직업소개·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(유효기간 3년)
 - **(신청대상)** ①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(직업소개사업·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)로서 ②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③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 - **(신청유형)** 사업유형 및 신청유형별 택1 하여 신청
 - **(사업유형)** ①직업소개사업(유료) / ②직업소개사업(무료) / ③직업정보제공사업 中 택1
 - **(신청유형)** ① I 형(광역형) / ② II 형(지역특화형) 中 택1
 - * (광역형) 온라인 취업포털 또는 본사와 지사가 함께 전국단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
 - (지역특화형) 청년·여성·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
 - **(신청방법)**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(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, <https://certi.keis.or.kr>)
 - **(선정절차)** 1단계 서류심사 →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
- **(연혁)** '06~'07년 우수기관 인증제 시범운영, '08년부터 매년 실시
- **(운영체계)** '노사정·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'가 평가 기준 마련 및 최종 심사,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업공모 등 제반 운영

- **(인센티브)** 3년간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, 장관 표창, 고용 분야 위탁사업 참여 시 우대, 시중은행 여신금리 우대 등

-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현판 제작·지원
- 교육·훈련·연수 등에 우대 및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
- 인증심사 결과 상위 기관 및 종사자에게 장관 표창 등 수여
- 기업은행,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
-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홍보
-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
-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(직업안정법 시행규칙 [별표2] 기준에 따름)
- 정부의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
- 유효기간(25~27) 동안 아래 요건*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가능
- * 위탁연도 직전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최소 B등급 이상이고 A등급 2회 이상

2. '24년 주요 개편 내용

① 역량있는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 프로세스 재정립

(‘24.3.6, 「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운영규정(고용노동부고시)」 개정)

- (신청유형 체계화) 기관의 대형화,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유형을 I형(광역형), II형(지역특화형)으로 체계화
- (선정기준 개선)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 신설, 성과배점 비중을 상향하고 인증 최저점수도 상향*

* 인증 최저점수를 구성항목의 영역별로 100분의 50에서 60으로, 총점은 700점에서 800점(1,000점 만점)으로 상향

- (시상방식 개편) 대상·최우수상·우수상 등으로 차등하여 시상

② 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로 사업 효과성 제고

- (인센티브) 금리 우대(농협, 기업은행 등), 민간위탁 가점 상향, 기타 행정처분 감경 및 민간위탁사업 우선선발 등
- (홍보) 우수사례집, 홍보영상 제작·배포 등 인지도 제고 지원

③ 평가지표 간소화(기존 19개→12개)로 현장의 행정부담 완화

- 사업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·중복지표 통폐합 등

3. 추진일정

- 사업공고(‘24.4.24.) → 사업설명회(5.9) → 사업신청(5.20.~6.3.) → 평가(6~10월) → 최종심의(11월) 및 수여식(12월)